

## 조선(朝鮮) 세종대(世宗代) 의원(醫員) 연구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sup>1</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sup>2</sup>제한동의학술원  
<sup>3</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up>4</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송지청<sup>1, 2</sup> · 엄동명<sup>3, 4</sup> \*

### A Study on Medical Persons in King Sejong Period -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Song Jichung<sup>1, 2</sup> · Eom Dongmyung<sup>3, 4</sup> \*

<sup>1</sup>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2</sup>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4</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as plenty of articles as primary historical records. The Korean medical history researches have also been driven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bout public services in Joseon dynasty related to medicine, We rarely know persons in public services, titles, levels and so on.

**Methods** : I focu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o research the titles of person in public services in early Joseon dynasty. I found 33 persons related to medicine and reorganized 21 persons who had titles.

**Results** : I got 10 titles of public medical services and more than 15 titles of public non-medical services, which were received according to their medical services and 6 grades.

**Conclusions** : I concluded that there were much more titles of public medical services than what we had already known and several titles and grades of public non-medical services, which were received according to their medical services.

**Key Words**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erson in medicine, early Joseon dynasty, King Sejong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

Rd, Iksan City, Cheonbuk, ROK  
Tel: +82-63-850-6941 Fax: +82-63-842-4328

## I. 序 論

조선시대 중앙의료 관직이라면 대개 典醫監의 都提調, 提調, 副提調, 典醫監正, 典醫副正, 判校, 僉正, 判官, 校理, 判官, 注簿 直長, 奉事, 參奉<sup>1)</sup> 등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관직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손홍렬의 연구<sup>2)</sup>나 한대희의 연구<sup>3)</sup> 등에서 조선 전기 중앙의료 관직에 대해 연구된 바가 있으나 提調에 관한 일반사항이나 각 부서에 배치된 醫員數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의료관직과 그 관직에 어떠한 인물들이 등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은 『承政院日記』와 더불어 날짜별로 사건을 기록하여 일차사료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의학사 분야에서도 두 기록은 자주 인용되는데, 『승정원일기』가 인조 1년(1623) 3월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기록이라 朝鮮前期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반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472년간 조선전후기 기록 모두 남아있다.

최근 『朝鮮王朝實錄』 기사를 검색하던 중, 典醫監의 都提調, 提調, 副提調, 典醫監正, 典醫副正, 判校, 僉正, 判官, 校理, 判官, 注簿 直長, 奉事, 參奉 등외에도 의료관직 명칭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당 관직에 어떤 인물들이 임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중 『世宗實錄』을 중심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醫員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관직에 임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世宗實錄』에 등장하는 의학관련 인물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仇思敬, 金麗生, 金有智, 金自堅, 金智, 盧重禮, 朴居, 朴允德, 裴尙文, 邊漢山, 徐賀, 楊弘達, 楊弘遂,

吳尙信, 元智, 元致義, 元鶴, 庾順道, 李穰, 李昶, 李中發, 任寶重, 全循義, 全仁貴, 鄭從夏, 曹敬智, 曹廳, 趙興周, 崔閔, 崔子雲, 崔自沱, 河讓, 黃順之, 黃子厚 등 33인이 있었다.

위 인물들을 다시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을 하여 관직을 제수받은 일이 있는 인물은 金麗生, 金有智, 金智, 盧重禮, 朴居, 朴允德, 裴尙文, 邊漢山, 楊弘達, 楊弘遂, 吳尙信, 元鶴, 李昶, 全循義, 全仁貴, 鄭從夏, 曹敬智, 曹廳, 趙興周, 黃順之, 黃子厚 등 21인인데, 이들의 관직을 고찰해 보았고 아울러 이들이 받은 官階 또한 살펴보았다.

## II. 本 論

### 1. 醫學 관련 官職

世宗시대 활동했던 醫員들 중 典醫監 소속 의원들이 다수였는데, 이들이 역임했던 관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典醫監提調 : 提調는 조선시대 중앙관직 중 하나로 잡무와 기술계통의 의학·천문·지리 등 堂上官 이상의 관업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었다. 정1품의 議政이 맡으면 都提調라고 하였고, 정2품 이상의 관리가 맡으면 提調,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맡으면 副提調라고 하였다. 黃子厚가 典醫監 提調를 역임하였다<sup>4)</sup>.

2) 判典醫監事 : 조선시대 判事는 대개 종1품 관직으로 해당 관부의 최고관직을 의미한다. 判典醫監事를 역임한 醫員은 楊弘達·曹廳·李昶·盧重禮·曹敬智이 있었다. 세종대에 楊弘達은 判典醫監事로서 세자가 명국에 사신으로 갈 때 사신단에 있었고<sup>5)</sup>, 曹廳

E-mail: haksan@wku.ac.kr

Received(23 July 2015), Revised(04 August 2015),

Accepted(05 August 2015).

1) 이현중, 동양연표. 서울. 탐구당. 1994.  
2) 손홍렬. 韓國 醫療制度史 研究 : 古代-朝鮮初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손홍렬. 韓國 醫學史研究 : 制度史를 중심으로. 서울. 수서원. 2013.  
3) 한대희.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4) 太宗 16년 3월 8일 ○庚子/下右代言韓尙德 恭安府尹黃子厚 前知高城郡事李養修于義禁府 初 前判原州牧事權緩與知申事柳思訥同里閤 其交甚密 緩家有蘇合油三斤 緩與思訥共謀 誘倭人上護軍平道全 受其單子 納于承政院 思訥啓下典醫監 而提調黃子厚以生蟲不用不受 (이하생략)

5) 太宗 7년 9월 25일 ○乙亥/遣世子提如京師 賀正也 以世子爲進表使 完山君李天祐副之 右政丞李茂爲進箋使 雞城君李來副之 侍從官右軍同知總制李玄 藝文館提學孟思誠及大護軍孫開祖 司宰監池有容等十二人 書狀官仁寧府左司尹薛僞 司憲執義許稠 通事判軍器監事郭海龍 仁寧府右司尹吳眞等六人 押馬上護軍李公孝等二人 押物奉常令李晳等二人 司僕

은 藥을 달여 올릴 때에 봉하지 않고 올렸다고 하여 과직당한 일도 있었으나<sup>6)</sup> 곧바로 복직이 되었던지 4일뒤에는 中宮의 難産에 判典醫監事 曹廳이 올린 藥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왕이 쌀 10석을 하사 하였다<sup>7)</sup>. 세종대에는 李昪<sup>8)</sup>을 義禁府鎮撫로 삼아 義州에 가서 사신으로 明國에 갔던 沈溫을 잡아오라고 하였고<sup>9)10)</sup>, 명국 사신 昌盛이 醫士이며 頭目<sup>11)</sup>인 毛琰을 데리고 와 왕을 문안하고서 判典醫監事인 盧重禮에게 자세히 왕의 병세를 문의한 일이 있고<sup>12)</sup>, 또한 盧重禮는 判典醫監事로서 『胎産要錄』을 편찬하고 반포하였다<sup>13)</sup>. 세조대에는 曹敬智가 判典醫監事로서 原從功臣 1등의 녹을 받았다<sup>14)</sup>.

3) 典醫監正 : 正은 조선시대 寺·院·監의 장관과 宗親府·敦寧府·訓練院의 정3품 당하관으로 典醫監正은 典醫監의 수장이다. 典醫監正을 역임한 의원은 鄭從夏·裴尙文·全循義·金智가 있었다. 세종대에 鄭從夏는 上왕(太宗)의 입직명령에 불응하여 참형을 당

하였고<sup>15)</sup>, 裴尙文은 平山<sup>16)</sup>에 가서 신하들의 眼疾에 溫泉浴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었으며<sup>17)</sup>, 端宗대에 全循義가 典醫監正이었고<sup>18)</sup>, 金智는 典醫監正에 임명되어 京畿道 觀察使의 병을 치료하였다<sup>19)</sup>

4) 典醫副正 : 副正은 조선시대 寺·院·監과 宗親府·敦寧府·訓練院의 종3품 관직이다. 典醫副正을 역임한 의원은 朴允德·金麗生이 있었다. 세종대에 사신으로 돌아오던 李相이 인후병을 앓자 朴允德은 그를 치료한 적이 있고<sup>20)</sup>, 金麗生은 황해도 지역에 돌림병이 돌아 구료활동을 하였다<sup>21)</sup>.

5) 典醫判官 : 判官은 內醫院·典醫監 등 관부의 종5품 관직이며, 소속관아의 행정실무를 지휘·담당하였으며,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도 참여하였다. 典醫判官을 역임한 의원은 黃順之·曹敬智가 있었다. 세종대에 典醫判官 黃順之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한 일로 『實錄』에 기록된 바가 있으며<sup>22)</sup>, 典醫判官 曹敬智는 中良浦의 온천수를 확인한 바가 있다<sup>23)</sup>.

6) 典醫主簿 : 注簿는 각 衙門의 文書를 주관하던 종6품 관직이다. 典醫主簿를 역임한 의원은 朴允

官副正河敬復 醫員判典醫監事楊弘達 內侍知內侍府事朴英文等二人 (이하 생략)

- 6) 太宗 12년 6월 19일 ○壬申/命罷判典醫監事曹聽職 以聽進藥不封也
- 7) 太宗 12년 6월 23일 ○丙子/賜文城君柳亮 左代言李灌廐馬各一匹 先是 中宮既免身 上謂金汝知曰 中宮每有難産之病 予以爲憂 今柳卿等供藥之勤 得無患焉 予甚喜之 檢校漢城尹楊弘達 檢校參議楊弘迪 前判典醫監事曹聽等劑藥有效 可賜米各十石 典醫注簿金士 副司直李軒米各五石 柳亮 李灌監劑有功 故有是賜 (이하 생략)
- 8) 醫員은 아니었으며 관직이 判典醫監事였다.
- 9) 太宗 즉위년 11월 25일 ○以判典醫監事李昪爲義禁府鎮撫 往義州待沈溫還 執之以來 仍命 溫若與使臣偕來 令溫稱疾 故留 密繫來 勿令使臣知之 恐朝廷錯料吾父子之變也
- 10) 李昪은 醫員은 아니었다. 하지만 判典醫監事로 있을 때에 왕이 李昪으로 하여금 沈溫을 잡아오게 한 이유가 있는데 왕이 같이 있던 明國 사신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沈溫에게 병을 핑계로 명국 사신과 따로 떨어뜨린 뒤에 잡아오게 한 조치였다.
- 11) 중국 사신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
- 12) 世宗 15년 11월 3일 ○壬午/昌盛遣醫士頭目毛琰問安 上引見 命上護軍金滓饋送 飲訖 命左副承旨鄭笨 判典醫監事 盧重禮 質問上體病證 仍給麻布四匹 盛又遣通事閔光美 進藥餌
- 13) 世宗 16년 3월 5일 ○命判典醫監事盧重禮 編《胎産要錄》 上卷詳論胎胎養之法 下卷具載嬰兒將護之術 令鑄字所模印頒行
- 14) 世祖 1년 12월 27일 ○傳旨議政府曰 (중략) 判典醫監事 曹敬智 (중략) 錄原從功臣一等 (이하 생략)

- 15) 世宗 2년 10월 28일 ○癸亥/上還自樂天亭 上王下典醫監正鄭從夏于義禁府斬之 (이하 생략)
- 16) 현재 黃海道 平山郡
- 17) 世宗 23년 1월 9일 ○丁未/副校理崔恒 前縣監鄭仲度有眼疾 命與典醫監正裴尙文浴于平山溫泉試驗
- 18) 端宗 2년 3월 13일 ○命選給行典醫監正全循義 行右軍司正邊漢科田
- 19) 端宗 2년 6월 4일 ○乙酉/京畿都事吳伯昌奉書于政院以啓曰 觀察使 去五月二十九日得寒熱病 嘔逆鼻衄 請遣良醫 卽遣典醫監正金智 齎藥往救
- 20) 世宗 10년 7월 29일 ○李相路得喉疾 遣典醫副正朴允德治之
- 21) 端宗 즉위년 6월 28일 ○慶昌府尹李先齊上書曰 臣聞 黃海道人民之病 驟發閭巷 漸染四方 北至平安 南至畿縣 死亡相尋 民戶掃地 豈無致然而然歟 (중략) 恭惟 世宗痛極宸衷 遣典醫副正金麗生 率其道醫五人 巡行州里 多方救療 又傳旨于監司曰 於文化 長淵 黃州 載寧 信川等處州縣 皆設厲祭壇 豐備奠物 令諸邑守令 至誠齋戒行祭 以消厲氣
- 22) 世宗 5년 4월 3일 ○刑曹啓 典醫判官黃順之妻世隱加伊背有子夫 奸柳與壽罪按律 世隱加伊絞 柳與壽杖一百 流三千里 命 如啓施行 世隱加伊 他罪人行刑時更啓
- 23) 世宗 23년 11월 8일 ○辛丑/生員秦有經告承政院曰 東大門外中良浦有水微溫 疑是溫泉 命上護軍尹麟 典醫判官曹敬智等求之 竟不得

德이 있었는데, 태종에게 뜰을 뜨면서 방서에 기록된 금기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혈위도 잘 못 정한 일로 궁에서 쫓겨났다<sup>24</sup>).

7) 典醫助教 : 助教는 고려시대 國子監이 설치되면서 學官으로서 國子助教, 太學助教 등의 직책이 있었는데 후에 太醫監에도 助教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典醫監에 근무한 學官으로 판단된다. 典醫助教를 역임한 의원은 朴居와 元鶴이 있었다. 朴居와 元鶴은 誠寧大君의 위급한 병에 정밀하게 진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典醫助教로 강등되었는데<sup>25</sup>, 이들의 이전 職帖이 무엇인지에 대한 『實錄』 기록은 없다.

8) 典醫權知 : 權知는 과거합격자로서 각 관원에 배속되어 임용대기중인 견습관원을 의미한다. 典醫權知를 역임한 의원은 盧重禮가 있었는데, 세종대에 중궁을 치료함에 의서를 상고하지 않고 왕명에 따라서만 약을 사용한 일로 강등당하여 典醫權知가 되었다<sup>26</sup>).

9) 典醫監令史 : 令史란 胥吏職인데, 주로 중앙의 주요 관청에 소속되어 文案 등을 담당한 행정실무직

으로서 품계에는 속하지 못하는 하급관리이다. 典醫監令史를 역임한 의원은 曹廳·朴居·元鶴·盧重禮·邊漢山이 있었다. 태종대에 誠寧大君의 痘瘡질환을 오진하고 진찰을 게을리 한 것을 이유 등으로 判典醫監事였던 曹廳과 典醫助教였던 朴居·元鶴이 典醫監令史가 되었다<sup>27</sup>. 세종대 盧重禮는 典醫權知로 강등당한 후 10일 뒤 다시 首陽大君의 학질에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한 일로 典醫監令史로 좌천되었고<sup>28</sup>, 단종대에는 文宗의 죽음을 이유로 內醫 邊漢山이 典醫監令史로 강등되었다<sup>29</sup>. 세종대 典醫權知였던 盧重禮가 좌천당하여 典醫監令史가 되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典醫權知보다 더 하급관직임을 알 수 있었다.

10) 典醫監廳直 : 廳直은 흔히 청지기라 하는데, 해당 관부의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관직이다. 典醫監廳直을 역임한 의원은 全循義가 있었다. 단종대에 문종의 죽음을 이유로 邊漢山이 令史로 강등되었을 때 全循義는 典醫監 廳直으로 강등되었다<sup>30</sup>.

24) 太宗 17年 8월 20일 ○命詔典醫注簿朴允德 檢校漢城尹楊弘達 上嘗以十七日灸關外穴 至是 下問其時不啓方書中禁忌之由 將下獄 傳旨代言等曰 弘達與允德細推後囚之 仍問允德曰 方書有針灸後 切忌以水濯手足之語 何不啓 及今下問 乃啓之乎 允德不能對 問弘達曰 曾於宮主之病 爾不見方書 進大毒之藥 上氣不能嘔逆 幾死復生 今宜灸小指次指間而誤灸次指中指間 又不啓禁忌 是何心哉 弘達對曰 宮主之病 豈不見方書誤灸 穴則臣從《銅人經圖》灸之 不與方書參考 則誠有罪 進藥之事 臣所未知 不啓禁忌 則臣老且病 未即詳審 臣實有罪 上曰 弘達太祖根隨者也 允德河城君韓珪女婿也 婿則無有例 然皆原之 自今毋更若此 弘達等感泣

12월 2일 ○癸未/黜內醫楊弘達 朴允德于外 弘達等劑進雀肉煎餅 不啓禁忌 故黜之 縛李軒 數其不敬之罪 宥之還任

25) 太宗 18年 2월 23일 ○甲辰/罷醫員楊弘達職限四品 收元鶴 朴居等職牒 降爲典醫助教 初 刑曹及司諫院上疏請弘達等不明言誠寧疾證之罪 上不允 至是 判書尹尙等詣闕固請故也

26) 世宗 28年 4월 1일 ○收盧重禮職牒 降屬典醫權知  
4월 2일 ○己亥/臺諫啓 盧重禮專以醫術 過蒙上恩 位至僉樞 宜當盡心竭力 圖報聖恩之萬一 今中宮違豫之時 不遍考方書 違達含默 必待上教 然後乃進藥 罪莫大焉 請置於法 以懲後來 上曰 重禮進藥 若有悔恨之事 則予何惜焉 但重禮 其心本自怠弛 稍有頑慢之態 故收職牒以懲之 且警其餘爾 大抵死生有命 豈一醫所能救哉 若等勿復言 再請不允

27) 太宗 18年 4월 6日 ○丙戌/視事于新樓下 仍置酒 上泣曰 太醫楊弘達 朴居 元鶴等 昔於慶安之卒啓曰 此疾臣所未嘗見 醫書亦未議論 予意以爲 乃何爲人之兒 得疾如此 甚愧恨焉 其後見醫書云 誤治熱氣 則手足痿痺 今此誠寧之疾 腰背疼痛 咸曰 風證 使之服人參順氣散 以致變證 又曰 順證 以至凶變 予見醫書 瘡疹之疾 若以風證治之 則十死一生 以此言之 罪不容赦 然從律治之 則雖云業不精矣 代此任者 亦且難得也 司憲執義許探等覈弘達 朴居等罪 以斬照律 上曰 罪雖至此 豈可輕殺哉 乃廢弘達爲庶人 朴居 曹廳 元鶴屬典醫監令史 政府 六曹 臺諫欲將弘達等依律斷罪 請至再三 不允

28) 世宗 28年 4월 12일 ○己酉/傳旨承政院 盧重禮當中宮未寧之時 有罪削職 爲典醫權知 今又首陽大君邁瘡疾 予問以前日治予瘡疾之藥 重禮皆遺忘 不以其藥治之 此則重禮之罪大矣 其令史曹定爲典醫監令史 又曰 大抵人臣貴賤 在人君予奪 昔在太宗時 宦者金海得罪 編配海州 其官守令不從上命 置上房待之如賓 後敗露受罪 然典醫監以重禮已爲堂上官而尊敬之 又爲令史而使之 未便 且此人本有疾病 但着頭巾仕于令史房 毋比他令史之例

29) 端宗 즉위년 5월 18일 ○庚戌/義禁府啓 全循義爲首從 重斬待時 邊漢山 崔隱隨從 減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曹敬智 全仁貴 金吉浩 趙興周 鄭次良 宋瞻 杖九十 議于政府 並收告身 循義定典醫監廳直 漢山 混令史 敬智 興周 仁貴 吉浩 次良 瞻仍仕內醫院

30) 端宗 즉위년 5월 18일 ○庚戌/義禁府啓 全循義爲首從 重斬待時 邊漢山 崔隱隨從 減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曹敬智 全仁貴 金吉浩 趙興周 鄭次良 宋瞻 杖九十 議于政府 並收告身 循義定典醫監廳直 漢山 混令史 敬智 興周 仁貴 吉浩 次良 瞻仍仕內醫院 / 邊漢山과 全循義는 6개월 뒤 令史와

11) 기타 : 의원들을 지칭하는 職名으로 醫員이 대부분이었는데, 內藥房醫員과 內醫라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曹廳은 『太宗實錄』에서 內藥房醫員이라고 언급하였는데 특이점은 약 조제를 바로 못했기 때문에 典醫監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sup>31)</sup>, 裴尙文은 『世宗實錄』 金海 아전이었는데 醫術로 진출하여 정3품까지 올랐고 항상 內藥房에서 근무하였다는 기록<sup>32)</sup>이 있어 역시 內藥房醫員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全循義·邊漢山·曹敬智·趙興周·吳尙信 등은 『實錄』에 內醫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醫學 이의 官職

1) 中樞院使 : 中樞院은 특정한 관장사항이 없이 문·무 담당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었다. 世宗 14년 黃子厚는 中樞院副使를 역임하였고<sup>33)</sup>, 19년에는 中樞院使를 역임하였다<sup>34)</sup>.

2) 同知中樞院事 : 中樞院에 속한 종2품 관직이다. 全循義는 세조대에 同知中樞院事를 역임하였다<sup>35)</sup>.

3) 僉知中樞院事 : 中樞院의 정3품 관직으로 僉知中樞院事, 僉知中樞院事, 僉知, 僉知事라고도 불린다. 역시 僉知中樞院事도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소속시켜 예우해 준 관직이었다. 僉知中樞院事를 역임한 인물은 黃子厚·盧重禮·全循義·金智가

있었다. 黃子厚는 中樞院使에까지 올랐으나 세종 20년에는 僉知中樞院事를 지냈다<sup>36)</sup>. 盧重禮는 세종 28년에 중궁을 치료하면서 의서를 상고하지 않고 왕명에 따라서만 약을 사용한 일로 강등당하여 典醫權知가 되었다가, 몇일 뒤 典醫監令史로 좌천되었는데 다음 해에 직첩을 돌려받고 아울러 僉知中樞院事로 임용되었다<sup>37)</sup>. 全循義<sup>38)</sup>와 金智<sup>39)</sup>는 세조대에 僉知中樞院事를 역임하였다.

4) 上護軍 : 조선초기 五衛의 정3품 무관직으로 五衛의 고급 지휘관이었다. 上護軍을 역임한 인물은 裴尙文·盧重禮·全循義·楊弘遂·曹敬智가 있었다. 裴尙文은 왕의 허락을 얻어 고향인 金海로 내려갈 때에 上護軍이었고<sup>40)</sup>, 盧重禮는 임종시 관직이 上護軍이었으며<sup>41)</sup>, 全循義와 楊弘遂는 세조대에 原從功臣의 녹을 받을 때에 上護軍이었고<sup>42)</sup>, 曹敬智는 嘉善大夫였다가 通政大夫로 資品이 강등될 때 上護軍이었다<sup>43)</sup>.

廳直에서 방면되었다.

31) 太宗 8년 12월 25일 ○黜內藥房醫員平原海 曹廳 令仕典醫監 上方不豫 以原海等劑藥不精也

32) 世宗 30년 4월 19일 ○傳旨承政院 上護軍裴尙文 其父年八十八歲 每歲春秋 許乘傳歸親 令其道監司給酒肉惠養 尙文 金海府吏也 以醫術進 爲上所知 得至正三品 常在內藥房 資緣市寵 蔑視朝官曰 都承旨不可望 他承旨則可爲也 其往金海也 必使人持胡床前導 與堂上官無異

33) 世宗 14년 9월 17일 ○以黃子厚爲中樞院副使 權蹈漢城府尹 宋箕司憲掌令

34) 世宗 19년 8월 26일 [○] 以黃子厚爲中樞院使 金孟誠同知中樞院事 李士寬京畿都觀察使 崔淑孫判閔延都護府事

35) 世祖 8년 4월 11일 ○丙子/以柳子煥爲吏曹參判 金從舜戶曹參判 盧叔全 全循義同知中樞院事 黃孝源漢城府尹 權愷 福川尹慶尙道都觀察使 元孝然原城君全羅道都觀察使 成任 中樞院副使 洪應承政院都承旨 李久炯左承旨 金謙光右承旨 尹欽左副承旨 盧思慎右副承旨 李繼孫同副承旨 安止行僉知中樞院事

36) 世宗 20년 5월 21일 ○甲辰/典醫提調黃子厚上言 濟州所產零陵香乾正之法 恐有未盡 乞當七月遣良醫 依法乾正 則不求中朝 而用之無窮 從之

37) 世宗 29년 11월 23일 ○壬子/以宜爲正義大夫 原川尹 盧重禮僉知中樞院事 洪約忠清道水軍處置使

38) 世祖 2년 5월 18일 ○以鄭麟趾爲議政府領議政 朴仲孫判曹判書 權躡知中樞院事 朴仲林藝文大提學 沈決同知中樞院事 朴彭年中樞院副使 趙完璧行僉知中樞院事 全循義 安位 崔守平僉知中樞院事

39) 世祖 3년 8월 14일 ○以尹師路領中樞院事 權擘判中樞院事 韓明滄吏曹判書 洪達孫兵曹判書 金光辟開城府留守 金淳吏曹參判 魚孝瞻戶曹參判 沈決 奉石柱同知中樞院事 金連枝司憲府大司憲 曹錫文都承旨 尹子雲左承旨 韓繼美右承旨 權權左副承旨 金碩右副承旨 鄭軾同副承旨 金吉通 金智 僉知中樞院事 趙瑾 姜子平司憲掌令

40) 世宗 30년 4월 19일 ○傳旨承政院 上護軍裴尙文 其父年八十八歲 每歲春秋 許乘傳歸親 令其道監司給酒肉惠養 尙文 金海府吏也 以醫術進 爲上所知 得至正三品 常在內藥房 資緣市寵 蔑視朝官曰 都承旨不可望 他承旨則可爲也 其往金海也 必使人持胡床前導 與堂上官無異

41) 文宗 2년 3월 11일 ○賻故行上護軍盧重禮家 米 豆 棺槨 重禮業醫 精於其術 近世之醫 罕有其比 性謙恭 爲內醫數十年 終始敬慎 荷恩兩朝 賞賜不可勝記 雖微賤者問藥 必諄諄命之 無倦色 世之醫者 類似微賤 官秩纔高 志氣暴驕 雖士大夫家邀致 必見難色 且索高價 故人以重禮爲賢云

42) 全循義 : 世祖 1년 12월 27일 ○傳旨議政府曰 (중략) 上護軍全循義 (중략) 錄原從功臣一等 (이하 생략)

楊弘遂 : 世祖 6년 5월 25일 ○傳旨吏曹曰 (중략) 上護軍楊弘遂 (중략) 錄原從三等功臣

43) 世祖 6년 8월 16일 ○己未/以尹子雲爲吏曹參判 郭連城

5) 大護軍 : 조선초기 五衛의 중3품 무관직이다. 大護軍을 역임한 인물은 楊弘逵·全仁貴<sup>44)</sup>·全循義가 있었다. 大護軍 楊弘逵는 세종대에 중궁의 풍병을 치료한 바가 있었으며<sup>45)</sup>, 全仁貴는 大護軍으로서 溫井神에 제사를 지낸 바가 있고<sup>46)</sup>, 全循義는 세조대에 大護軍일 때 亂臣 李保仁의 豐壤 땅을 하사 받았다<sup>47)</sup>.

6) 護軍 : 조선초기 五衛의 정4품 무관직으로 大護軍의 차위직이다. 護軍을 역임한 인물은 裒尙文·趙興周·全仁貴이다. 裒尙文과 趙興周는 세조대에 護軍으로서 原從功臣의 錄을 받았고<sup>48)</sup>, 全仁貴<sup>49)</sup>는 세조대에 護軍으로서 원종공신의 녹을 받았다<sup>50)</sup>.

7) 司直 : 五衛의 정5품 무관직으로 副護軍의 하위이고 副司直의 상위직이다. 金有智가 세종대 司直으로서 原從功臣의 녹을 받았다<sup>51)</sup>.

8) 司正 : 司正은 五衛의 정7품 무관직이다. 邊漢山이 문종의 죽음 때문에 직첩도 박탈당하고 誅滅의 상소까지 받았으나 결국 右軍의 司正으로써 科田과 職帖을 돌려받았다<sup>52)</sup>.

尹吉生同知中樞院事 李崇之中樞院副使 金連枝仁壽府尹 李好誠 洪興祖行兪知中樞院事 李文炯司憲執義 降曹敬智資爲通政行上護軍 以諫院請也

44) 全循義의 父

45) 世宗 22년 4월 10일 ○上曰 中宮曾患風疾 自浴溫泉以役前疾永痊 是乃沐浴之效 亦是醫員醫女藥餌之功 遂賜大護軍 楊弘逵 判典醫監事盧重禮內廐馬各一匹 醫女召非米六石

46) 世宗 24년 3월 21일 ○壬午/命大護軍全仁貴 祭溫井神

47) 世祖 3년 3월 23일 ○以李徽平山田 賜讓寧大君禔 (중략) 李保仁豐壤田 賜大護軍全循義 若有家舍處 并家財賜之

48) 世祖 1년 12월 27일 ○傳旨議政府曰 (중략) 行護軍裒尙文 (중략) 錄原從功臣一等 (중략) 護軍趙興周 (중략) 錄原從功臣三等 (이하 생략)

49) 당시 故人이었다.

50) 世祖 8년 11월 9일 ○傳旨吏曹曰 故敦寧安壽山 故判敦寧金九德 故摠制金五文 前監察呂宗敬 修義交尉柳子濱 故郡事韓卷 前判事李添老 行直長朴元直 護軍柳河 故護軍全仁貴 前通贊盧定行 司勇萬同源 故學生金處 故牧使金有讓 前郡事楊國華 副司直金孝順 · 玄得利 吹螺亦李止 司鑰朴良守 前司正李喜山 敦勇校尉李龍壽 行司正朴枝茂 · 金熙瑞 本宮奴張成萬 私奴保霖 · 朴非山 · 姜今音同 · 姜白同追錄原從功臣三等

51) 世祖 1년 12월 27일 ○傳旨議政府曰 (중략) 行司直金有智 (중략) 錄原從功臣三等 (이하 생략)

52) 端宗 2년 3월 13일 ○命還給行典醫監正全循義 行右軍司正邊漢山科田

9) 典書 : 조선초기 六曹의 정3품 관직이다. 태종대에 楊弘逵가 工曹의 典書를 역임하였다<sup>53)</sup>.

10) 參議 : 參議는 六曹의 정3품 관직이다. 태종대에 黃子厚는 戶曹參議를 역임하였다<sup>54)</sup>.

11) 檢參議 : 檢參議는 아마도 檢校參議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는데, 檢校란 조선 초에 職銜만 주고 公事는 맡지 않았던 벼슬이다. 처음에는 勳舊세력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는데, 뒤에 軍功이나 특별한 功勞가 있는 자에게 주었다. 세종대에 檢參議 曹廳은 구료를 잘하여 상을 받았다<sup>55)</sup>.

12) 別坐 : 無祿官<sup>56)</sup>으로 校書館이나 尙衣院, 氷庫 등에 소속된 정5품 또는 중5품 관직이다. 楊弘逵가 정종대에 宮庫別坐로 처음 관직에 나갔다<sup>57)</sup>.

13) 府尹 : 조선시대 지방행정단위의 하나인 府의 우두머리 관직으로 중2품 문관이 임명되었다. 楊弘逵는 태조의 충애를 받아 檢校承寧府<sup>58)</sup>尹에 임명되었는데 虛職이었기 때문에 實職을 요구하였으며<sup>59)</sup>, 이듬해에 檢校漢城府尹에 임명되었다<sup>60)</sup>.

14) 司宰副正 : 司宰監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이는 어물, 육류, 식역, 딸감나무 등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盧重禮는 세종대 司宰副正을 역임하였다<sup>61)</sup>.

53) 太宗 4년 5월 17일 ○司諫院請罷工曹典書楊弘逵職 不允以弘逵母賤故也 上之不允 從太上之命也 憲司令弘逵納其母四祖戶口 上召執義金自知命曰 弘逵之母 衆所共知 何必令納戶口! 但弘逵 自父王時專任醫藥 及子即位 亦勤其任 今以父王之命授職

54) 太宗 14년 5월 28일 ○遣戶曹參議黃子厚于慶尙道高靈縣 按驗疑獄. (이하 생략)

55) 世宗 10년 1월 13일 ○上以醫人檢參議曹廳小心救人 且年老 賜米十石

56) 나라의 俸祿이 없는 벼슬이다.

57) 定宗 1년 3월 13일 ○許醫人楊弘逵 弘迪等 與朝士同仕 趙璞進曰 醫人楊弘逵 弘迪等 皆爲宮庫別坐 監察以爲賤隸子孫 不欲同坐 上曰 予亦曾聞之矣 然弘逵等 良醫也 我太上王再患病 盡心醫療 由是太上王甚愛之 予亦視猶兄弟 且其爲賤無明證 雖與之同事 亦何嫌耶 若有功國家 則雖賤隸豈無可通之理乎

58) 承寧府는 생존한 선왕을 모시고 모든 사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아이다. 定宗 2년에 太祖를 위해 설치하였다.

59) 太宗 5년 11월 18일 ○命奪楊弘逵職 弘逵常侍太上王疾得幸 爲檢校承寧府尹 營求真拜 憲府劾啓曰 弘逵 賤口也 用醫術 位至二品 極矣 遂生踰分之心 請收其職牒 勘問以懲上只令奪爵

60) 太宗 6년 5월 12일 ○辛丑/遣右代言尹思修 檢校漢城府楊弘逵 齋藥餌及宮醞 問黃儼之疾

15) 原從功臣 : 原從功臣은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신하에게 준 칭호인데, 조선조 세조대에 대대적으로 原從功臣의 錄을 제수하였다. 이때에 僉中樞院事 盧重禮, 行護軍 裴尙文, 上護軍 全循義, 判典醫監事 曹敬智는 原從功臣 1等に 제수되었고, 進義副尉 金麗生, 行司直 金有智가 原從功臣 2等に 제수되었으며, 行正<sup>62)</sup> 金智, 上護軍 楊弘遂, 監正<sup>63)</sup> 吳尙信, 護軍 全仁貴, 護軍 趙興周가 原從功臣 1等に 제수되었다<sup>64)</sup>.

16) 기타 : 외에도 羅州牧使, 星州牧使, 仁寧府司尹, 戶曹參議, 開城留後司 副留後, 忠淸道 觀察使 등이 있었는데 모두 黃子厚의 직함이었으며, 金麗生이 역임한 進義副尉는 어떤 관직인지 상고할 수 없었다.

### 3. 官階

醫員들이 받았던 품계는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通政大夫 등이 있었다.

1) 正憲大夫 : 文官 正2품 上階의 官階名이다. 세조대에 全循義가 正憲大夫가 제수되었는데, 實職에 임용되지는 않았다<sup>65)</sup>.

2) 正憲大夫司果 : 司果는 조선시대 五衛의 正6품 무관직이다. 처음에 副司直이었으나 세조 12년(1466년) 司果로 개명되었다. 세종대에 曹敬智가 正憲大夫司果에 제수되었다<sup>66)</sup>.

3) 資憲大夫 : 文官 正2품 下階의 官階名이다. 세종대에 黃子厚는 資憲大夫에 제수되었고<sup>67)</sup>, 세조대에는 全循義가 侍藥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하여 資憲大夫에 제수되었다<sup>68)</sup>.

4) 嘉靖大夫 : 文官 中2품 上階의 官階名이다. 『成宗實錄』에 全循義가 세종대에 嘉靖大夫까지 올랐다는 기록<sup>69)</sup>이 있지만 가장 높은 품계로는 세조대에 正憲大夫에 제수되었다.

5) 嘉善大夫 : 文官 中2품 下階의 官階名이다. 세조대에 曹敬智가 超資하여 嘉善大夫를 제수 받았으나 신하들이 이 일을 문제 삼았고 결국 몇 달 뒤 通政大夫로 資品을 강등되었다<sup>70)</sup>.

6) 通政大夫 : 文官 正3품 上階의 官階名으로 文

祖朝有全循義官至正憲 未嘗敍於顯職 今若立此法 則後雖以堂上之醫 敍於六曹 誰得而防之哉 法者萬世通行者也 不可不改 不聽

61) 世宗 5년 3월 22일 ○大護軍金乙支 司宰副正盧仲禮 前教授官朴堧等入朝 質疑本國所產藥材六十二種內 與中國所產不同丹蔘 漏蘆 柴胡 防己 木通 紫莞 葳靈仙 白斂 厚朴 芎藭 通草 蘘活 獨活 京三陵等十四種 以唐藥比較 新得眞者六種 命與中國所產不同藥丹蔘 防己 厚朴 紫莞 芎藭 通草 獨活 京三陵 今後勿用

62) 錄勳 기록에는 正으로만 되어 있다. 어느 관청의 正이었는지 상고할 수 없었다.

63) 錄勳 기록에는 監正으로만 되어 있다. 아마도 典醫監正이었다고 판단된다.

64) 世祖 1년 12월 27일 ○傳旨議政府曰 (중략) 僉中樞院事 盧重禮 (중략) 行護軍 裴尙文 (중략) 上護軍 全循義 (중략) 判典醫監事 曹敬智 (중략) 錄原從功臣一等 (중략) 進義副尉 金麗生 (중략) 行司直 金有智 (중략) 錄原從功臣二等 (중략) 行正 金智 (중략) 上護軍 楊弘遂 (중략) 監正 吳尙信 (중략) 護軍 全仁貴 (중략) 護軍 趙興周 (중략) 錄原從功臣三等 (이하 생략)

65) 成宗 24년 9월 16일 ○傳旨府令楊熙止 司諫院正言柳崇祖等來啓曰 今因醫員上疏 精於其術者命敍顯職 臣等考《大典》 載律員 算員所業精通者 授京外吏職 而無敍顯職之文 顯職云者謂六曹 議政府也 此非醫官所可雜處也 傳曰 世人以醫爲賤 故人不喜入屬 往者權擯官至判書 俞元老歷敍顯職 豈可例以醫員而不授顯官乎 且醫事於國家甚重 爾等雖言之不可改也 熙止等更啓曰 權擯習讀官 元老文科出身也 今亦有如此人 則雖用於顯職可也 豈以醫科出身者敍於顯職乎 世

66) 成宗 21년 9월 28일 ○以李念義爲資憲同知敬寧府事 曹敬智正憲司果 崔溆折衝司果

67) 世宗 22년 8월 21일 ○前中樞院使黃子厚卒 字善養 忠淸道懷德縣人 初以蔭補官 累歷中外 至癸巳秋 授刑曹左參議 冬 建言立號牌之法 遷戶曹參議 陞開城留後司副留後 乙未 再遷恭安府尹 請行銅錢之法 丙申 以罪貶于懷德縣 辛丑秋 拜左軍總制 壬寅 出爲忠淸道都觀察使 以罪又貶晉州 甲辰秋 賜環 判羅州牧事 壬子秋 陞資憲 中樞院副使 丁巳夏 建言設針灸專門之業 秋 陞中樞院使 子厚曉醫藥 常提調典醫 戊申夏 以老病乞骸骨 至是卒 年七十八 計聞 輟朝一日 致弔致膊 謚惠懿 愛民好與惠 溫柔賢善懿 有子曰裕

68) 世祖 10년 11월 4일 ○以全循義爲資憲大夫同知中樞院事 任元濬嘉靖大夫禮曹參判 李永肩仁壽府尹 崔漢卿史曹參議 辛永孫 金尙珍僉中樞院事 金震知 忠淸道觀察使 金階行 司憲掌令 金漬司諫院正言 循義 元濬侍藥有勞 故特命加資

69) 成宗 9년 12월 12일 ○傳旨史曹 任元濬敍用 權擯·曹彥·文仲善各加一資 近日大妃末寧 擯等調藥有功 有是命 【史臣曰 國初無醫官大顯者 世宗朝 盧仲禮醫術甚精 纔陞僉知 世祖朝 全循義 金尙珍亦名醫 而終於嘉靖 上重醫術 醫官陞堂上者多 擯尤見寵 遂大顯 宦官自睿宗朝始大盛 封功臣者七八人 自後中雲爲崇政 金孝江 安仲敬 柳漢 金處善等皆拜資憲 金章羅列掖庭 上雖制抑宦官 而官爵則濫矣】

70) 世祖 6년 8월 16일 ○乙未/以尹子雲爲史曹參判 郭連城尹吉生同知中樞院事 李崇之中樞院副使 金連枝仁壽府尹 李好誠 洪興祖行僉中樞院事 李文阿司憲執義 降曹敬智資爲通政行上護軍 以諫院請也

官階에서는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였다. 曹敬智가 通政大夫에 제수되었다<sup>71)</sup>.

### Ⅲ. 考察 및 結論

조선전기 『世宗實錄』에 등장하는 의학 관련 인물들이 역임했던 최고의 관직은 典醫監提調였다. 提調는 품계에 따라 都提調, 提調, 副提調로 나뉘며, 관직상 겸직이므로 醫員이 아닌 인물도 역임하였다. 黃子厚가 典醫監 提調를 역임하였다. 醫員 신분으로 역임한 典醫監의 최고위 관직으로는 判典醫監事였다. 判典醫監事는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盧重禮, 楊弘達, 曹敬智 등과 같은 인물이 역임하였다. 그 다음은 典醫監正과 典醫副正으로 각각 정3품 당하관,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는데, 典醫監正으로는 金智, 裴尙文, 全循義 등이, 典醫副正은 朴允德, 金麗生 등이 제수 받았다. 典醫判官은 종5품 관직으로 典醫監의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는 관직이었고, 黃順之와 曹敬智가 典醫判官을 역임하였다. 그 아래 典醫主簿가 있었는데 주로 典醫監의 文書를 주관하던 관직으로 종6품이었고, 朴允德이 세종대 典醫主簿였다가 세종대 典醫副正이 되었다. 典醫監 소속 말단 관직으로는 典醫助教, 典醫權知, 典醫監令史, 典醫監廳直이 있었다. 典醫助教는 정확히 어떤 일을 담당하는 관직인지 상고할 수 없으나 고려 시대에 學官으로 太醫監에 배치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선초기에는 典醫監의 學官이었을 것이다. 朴居와 元鶴이 典醫助教를 역임하였다. 典醫權知는 원래 醫科試에 합격하고 관원에 임용되기 전의 견습관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세종대 判典醫監事였던 全循義가 중궁을 잘못 치료하여 典醫權知로 강등당하였다. 典醫監令史는 胥吏職으로 주로 중앙의 주요 관청에 소속되어 文案 등을 담당한 행정실무직이었는데 曹廳·朴居·元鶴·盧重禮·邊漢山·楊弘達이 역임하였다. 典醫監廳直은 주로 典醫監 잡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세종실록』에 기록된 의원들이 담당했던

관직중 최하위 官職으로 판단된다. 全循義가 典醫監廳直을 역임하였다. 한편 『실록』에 기재된 의원들이 보통은 ‘醫員’으로 불렸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內醫’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한 명칭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內醫로 언급된 의원들은 全循義·邊漢山·曹敬智·趙興周·吳尙信·裴尙文·曹廳 등이 있었다.

Table 1. The titles in public services, related to medicine.

官職名	인물
典醫監提調	黃子厚
判典醫監事	盧重禮, 楊弘達, 曹敬智, 李勗, 曹廳
典醫監正	全循義, 鄭從夏, 裴尙文, 金智
典醫副正	朴允德, 金麗生
典醫判官	黃順之, 曹敬智
典醫主簿	朴允德
典醫助教	朴居, 元鶴
典醫權知	盧重禮
典醫監令史	盧重禮, 邊漢山, 曹廳, 朴居, 元鶴
典醫監廳直	全循義

『실록』 기사를 통해 醫學과 관련되지 않은 官職으로 醫員들이 제수 받은 다른 官職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中樞院과 관련하여 종1품의 中樞院使, 종2품의 同知中樞院使, 정3품의 僉知中樞院使가 있었는데 증추원 자체가 소임이 없는 문·무 당상관이 소속된 기관이었으므로 醫員들에게 제수한 中樞院 관련 관직들은 醫員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虛職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黃子厚는 中樞院使를 역임하였고, 全循義는 同知中樞院使를 역임하였으며, 黃子厚·盧重禮·全循義·金智는 僉知中樞院事를 역임하였다. 또한 五衛와 관련된 武官職도 醫員들에게 제수하였는데, 정3품의 上護軍에 裴尙文·盧重禮·全循義·楊弘達·曹敬智가 제수되었고, 종3품의 大護軍에 楊弘達·全仁貴·全循義가 제수되었으며, 정4품의 護軍에 裴尙文·趙興周·全仁貴가 제수되었다. 모두 武官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아니라 功勳을 논할 때 언급된 官職들이었다. 이 외에 司直, 司正 등도 武官職으로서 대개는 醫員들의 공로를 치하하는데 제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檢參議도 虛

71) 世祖 6년 8월 16일 ○己未/以尹子雲爲吏曹參判 郭連城尹吉生同知中樞院事 李崇之中樞院副使 金連枝仁壽府尹 李好誠 洪興祖行僉知中樞院事 李文炯司憲執義 降曹敬智資爲通政行上護軍 以諫院請也

職이었으며, 府尹을 제수 받은 楊弘達도 모두 檢校였는데 虛職이었고, 別坐 또한 無祿官이었다. 마지막으로 司宰監의 副正도 있었는데, 이는 궁궐에 쓰이는 물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Table 2. The titles in public services, non-related to medicine.

官職名	인물
中樞院使	黃子厚
同知中樞院使	全循義
僉知中樞院事	黃子厚, 盧重禮, 全循義, 金智
上護軍	盧重禮, 全循義, 楊弘遂, 裴尙文, 曹敬智
大護軍	全仁貴, 全循義, 楊弘遂
護軍	全仁貴, 裴尙文, 趙興周
司直	金有智
右軍司正	邊漢山
典書	楊弘達
參議	黃子厚
檢參議	曹廳
別坐	楊弘達
檢校漢城府尹	楊弘達
檢校承寧府尹	楊弘達
司宰副正	盧重禮
進義副尉	金麗生
原從功臣1等	盧重禮, 裴尙文, 全循義, 曹敬智
原從功臣2等	金麗生, 金有智
原從功臣3等	楊弘遂, 吳尙信, 全仁貴, 金智, 趙興周

『세종실록』에 기재된 의학 관련 인물들이 제수 받은 官階는 문관 정2품 上階의 正憲大夫, 문관 정2품 下階의 資憲大夫, 문관 중2품 上階의 嘉靖大夫, 문관 중2품 下階의 嘉善大夫, 문관 정3품 上階의 通政大夫가 있었고, 중6품 무관직인 正憲大夫司果가 있었다. 曹敬智가 正憲大夫司果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通政大夫 이상의 堂上官에 제수 되었다.

Table 3. The grades in public services.

官職名	인물
正憲大夫	全循義
資憲大夫	黃子厚, 全循義
嘉靖大夫	全循義
嘉善大夫	曹敬智
通政大夫	曹敬智
正憲大夫司果	曹敬智

총괄하면 조선초기 의학 관련 관직은 典醫監提調, 判典醫監事, 典醫監正, 典醫副正, 典醫判官, 典醫主簿 이외에도 典醫助教, 典醫權智, 典醫監令士, 典醫監廳直 등과 같은 관직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醫員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문·무 당상관에게 내리는 중1품에 해당하는 中樞院使나, 五衛관련 고위 武官職, 그리고 檢校와 같은 虛職들도 다양하게 醫員들에게 제수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된 인물들의 官職<sup>72)</sup> 및 官階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titles and grades in public services sorting by persons.

人名	官職名	官階名
金麗生	典醫副正, 進義副尉	
金有智	司直	
金智	典醫監正, 僉知中樞院事	
盧重禮	司宰副正, 判典醫監事, 典醫權知, 典醫監令史, 僉知中樞院事, 上護軍	
朴居	典醫助教, 典醫監令史	
朴允德	典醫主簿, 典醫副正	
裴尙文	典醫監正, 上護軍, 護軍	
邊漢山	典醫監令史, 右軍司正	
楊弘達	宮庫別坐, 工曹典書, 檢校承寧府尹, 檢校漢城府尹, 判典醫監事, 大護軍	
楊弘遂	大護軍, 上護軍	
吳尙信	監正	
元鶴	典醫助教, 典醫監令史	
李昷	判典醫監事	
全循義	典醫監廳直, 典醫監正, 上護軍, 僉知中樞院事, 大護軍, 同知中樞院使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
全仁貴	大護軍, 護軍	
鄭從夏	典醫監正	
曹敬智	典醫判官, 判典醫監事, 上護軍	嘉善大夫, 通政大夫,

72) 官職은 인물들이 역임한 시대순으로 열거하였다.

		正憲大夫司果
曹廳	判典醫監事, 典醫監令史, 檢參議	
趙興周	護軍	
黃順之	典醫判官	
黃子厚 <sup>73)</sup>	參議, 典醫監提調, 中樞院使	資憲大夫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References

1. Lee HJ. A Asian Chronology. Seoul. Tamgudang. 1994. 이현중, 동양연표. 서울. 탐구당. 1994.
2. Park HP. The Dictionary of Medical Person in Joseon Dynasty.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12. 박훈평. 조선의 인지.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3. Lee ES. The dictionary of Historical Terms. Seoul. Taoreum. 2015. 이은식.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 타오름. 2015.
4. Han CH. Public Service and Politics in Early Josean Dynasty. Daegu. Keimyung Univ. Press. 2008. 한충희.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5. Son HR.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Korea(From Ancient to Early Joseon Dynasty). Kyunghee Univ. Doctorate Thesis. 1986. 손홍렬. 韓國 醫療制度史 研究 : 古代-朝鮮初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6. Son HR. A Study of the Medical History in Korea(Based on the Medical System). Seoul. Suseowon. 2013. 손홍렬. 韓國 醫學

史研究 : 制度史를 중심으로. 서울. 수서원. 2013.

7. Han DH.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the Early Chosun-Dynasty. Kyungsan Univ. Doctorate Thesis. 1996. 한대희.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8.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73) 黃子厚의 경우 이 외에도 官職이 다수 있었으나 醫學과 관련된 행적이 있는 경우의 관직으로 국한하였다.